



: 2021-01-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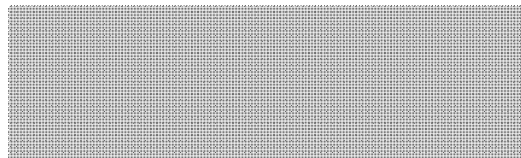
서울고등법원

제 9 민 사 부

결 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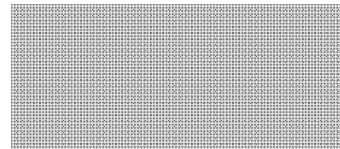
사 건 2007나34311(본소)(추가판결) 자동차인도등
2007나34328(반소)(추가판결) 사용료

신청인[원고(반소피고)]



피신청인[피고(반소원고)]

[Redacted] 주식회사



주 문

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
신 청 취 지

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7나34311(본소), 2007나34328(반소) 사건에서,

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[redacted] 버스에 대한 유치권 행사일인 2006. 4. 30.부터 위 버스의 폐차일인 2012. 7. 5.까지 1일 439,000원의 비율에 의한 영업손실금 및 위 버스의 매수금 41,000,00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가.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07나34311(본소), 2007나34328(반소) 사건(이하 '이 사건 본안사건'이라 한다)에서, 이 법원은 2008. 1. 15. 이 사건 본안사건의 원고(반소피고) 겸 항소인이던 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본안사건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

나. 이에 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[2008다20799(본소), 2008다20805(반소)], 대법원은 2008. 6. 26.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같은 해 7. 1. 확정되었다.

2. 판단

가.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 요지

신청인은,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3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, 이 사건 판결은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 및 입증 중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,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[redacted] 버스에 관한 추가수리비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



단을 누락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, 이 사건 판결은 재판을 누락한 것이어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추가판결은 청구의 내용이 가분적이어서 일부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 가능하고,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판결을 할 수 없으며, 일부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법원이 잘못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는 전부판결과 같은 성질의 추가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 있는 판결로 취급하여 상소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,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의 신청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이 사건 판결의 주문과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본안사건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 후 대법원에서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2008. 7. 1.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는 판단이 유탈된 소송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의 신청인의 청구취지와 유사한 내용의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추가판결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다.

3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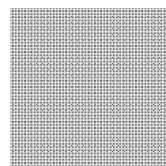
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5. 1. 5.

재판장

판사

이대경





: 2021-01-26

판사 이훈재

판사 최육진